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424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의자 : 오세희 · 김병주 · 이훈기

전진숙 · 김태선 · 김남희

위성곤 · 이주희 · 박지혜

박희승 · 정진욱 · 장종태

김우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아울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재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시대 변화

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9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의6제4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의4제5항”을 “제26조의4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1.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자료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매출액 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정보
제2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9(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 협회 ·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취소 및 말소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점 등록의 유효기관이 경과한 경우

3. (생 략)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⑤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
-----.

1.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자료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매출액 정보(「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1. ~ 2. (생략)

⑥ (생략)

<신설>

정보

4.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9(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협회·단체·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취소 및 말소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